

일자리 기여

개

등록번호	재난예방과-16703
등록일자	2022. 12. 28.
결재일자	2022. 12. 28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

소방장	소방민원팀장	재난예방과장	
김수희	조용희	전결 2022. 12. 28. 장순정	
협 조			

2023년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계획

새로운 경기

공정한 세상

2023년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계획

I 추진배경 및 방향

□ 관련근거



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
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(소방안전교육)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5조(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)
- 「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2조(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)

□ 추진방향

-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초기대응 능력 향상
-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 및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
-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병행 실시로 민원인 편의 도모 등

II 2022년 추진현황

□ 추진현황(1월~12월)

교육대상 업소현황	교육 이수현황				이수율
	계	집합교육	사이버교육	폐업	
563개소	563개소	0개소	557개소	6개소	100 %

Ⅲ

2023년 추진계획

추진기간 : 연중

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

- 다중이용업주(미성년, 고령,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 사유시 관리책임자)
- 해당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
- 다중이용업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
- 『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』을 위반하여 적발된 영업주 및 종업원

소방안전교육의 시기

- 신규교육
 - 다중이용업주 :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
 - 종업원 :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
 - 지위승계자 : 소방서장이 통보한 교육일까지
 - 설치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신고자 : 완공신고 전
- 수시교육 :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
- 보수교육 :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

소방안전교육의 연기 : 3개월 범위내

- 교육대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
-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
-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

방 법 :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

- 집합교육
 - 교육일시 : 매월 1회
 - 교육장소 : 평택소방서(2층 소회의실)
- 사이버교육
 - 교육일시 : 수시
 - 교육방법 : 한국소방안전원 (www.kfsi.or.kr)

IV

세부추진 계획

□ 집합교육

○ 교육일시 :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14:00 ~

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일	26	24	30	27	25	29	27	31	21	26	30	28

○ 교육장소 : 평택소방서 2층 소회의실

☞ 필요 시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교육 시 병행추진(2시간 이상)

○ 교관

- 소방민원팀장(완비담당자) : 관련법령 및 화재예방 교육 등

- 1급 응급구조사 : 응급처치 교육

☞ 필요 시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활용

○ 교육내용

- 화재안전 관련된 법령 및 제도

-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

- 소방·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

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

○ 교육안내

- 대상 : 교육시기 1개월전 대상 영업주

- 방법 :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

- 인원 : 민원팀 완비담당자 등

- 내용 :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안내

○ 교육결과 관리

- 안전교육이수자 : 이수증명서 교부

- 미이수자 : 과태료부과 및 수시교육 통보

※1차 위반 : 50만원, 2차 위반 :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: 300만원

V

행정사항

- 소방민원팀장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안내 등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,
- 다중이용업소 완비담당자는 집합 교육 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.
2.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부.
3.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.
4.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대장 1부.
5.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부.
6.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안내문 1부. 끝.

붙임 1

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

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[별지 제1호 서식]

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			
교육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 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 시		
영업장 명칭			주 소
교육대상자	영업주	성 명	생년월일
		연락처	(전 화 :) (휴대폰 :) (거주지 :)
	종업원	성 명	생년월일
		연락처	(전 화 :) (휴대폰 :) (거주지 :)
접수번호		교육일시	20 년 월 일 00 : 00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
20 년 월 일 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			
평택소방서장 귀하 ※ 교육대상자가 (영업주,종사원)임을 확인함 : 확인자 소속 ,계급 ,성명 (서명)			
구비서류		준비물	
1.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종업원의 경우 “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” 1부.		1.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 등)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. ※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	

----- 절 취 선 -----

접수번호 :	소방안전교육 신청 접수증
<input type="checkbox"/> 업 소 명 : <input type="checkbox"/> 소 재 지 : (☎ -) <input type="checkbox"/> 참 석 자 : 영업주(), 종업원()	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신청서를 접수합니다.	
20 . . . 평택소방서장	

붙임 3

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

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

제 20 - 호

성 명 생년월일

주 소

위 사람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※ 유효기간: 년 월 일까지

소방청장,
○○(본부, 소방서)장

직인

붙임 5

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

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[별지 제3호 서식]

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즉시
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		전화번호		
영업주 성명		생년월일		(남, 여)
영업소의 소재지				

연기대상자 및 사유	[] 영업주	[]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	[] 종업원
	성명	생년월일	(남, 여)
	주소	전화번호	
	직책·자격		
	연기사유	[] 업무관련 국외체류 [] 질병·입원·거동곤란 [] 타법령상 의무이행 등() [] 다중이용업주 변경 [] 기타()	
	비고	연기 사유 종료 예정일 20 년 월 일 교육희망일 20 년 월 일	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소방본부장·소방서장 귀하

※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란입니다.

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: 년 월 일까지(교육예정일시 : 년 월 일)

접수번호 : - 호	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 접수증
<input type="checkbox"/> 업소명 :	
<input type="checkbox"/> 소재지 :	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기대상자 : [] 영업주 []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[] 종업원	
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: 년 월 일까지(교육예정일시 : 년 월 일)	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소방본부장·○○소방서장 (인)

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문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(소방안전교육)와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3호(보수교육)』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이 신설되어 2016.01.21.부터는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< 다중이용업소법 개정내용 >

- 법 제8조(소방안전교육) **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**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.(15.1.20. 공포)
-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[보수교육 :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('16.1.21. 시행)]
 - ※ 2016. 1. 20. 이전 교육이수자 : 2018.01.20.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 - ※ 2016. 1. 20. 이후 교육이수자 : 2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(매 2년 1회)
 - ※ 교육 미 이수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1호에 의거
 - ▶ 1차위반시 50만원 ▶ 2차위반시 100만원 ▶ 3차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

<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안내 >

○ (수강방법)

- (1) 한국소방안전원 검색. 홈페이지(<http://www.kfsi.or.kr/user/Intro.do>).
- (2) 다중이용업 교육 중 보수교육(2년주기 재교육) 선택
- (2) 화면하단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(보수) ‘수강신청’ 선택
- (3) 수강신청 후 회원가입
 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업소명 정확히 입력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 - 신규, 보수, 수시과정 중 보수교육 신청
- (4) 교육수강 : ‘나의강의실, 나의학습현황’ 에서 ‘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’ 클릭
 - 교육수강 : ‘학습하기’ 클릭
 - 학습진도 : 제한 없음(1일 100% 수강 가능)
 - 진도체크 : 학습자가 스크롤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제한
- (5) 수료기준 : 수강(진도율 90%이상) ⇒ 설문조사(필수) ⇒ 수료 완료
- (6) 이수증명서 출력 : ‘나의강의실, 나의학습이력’ 화면에서 출력 가능
 - ※ 이수증 프린트 혹은 이수번호 필히 저장 - 추후 수료 여부 확인 시 필요.

※ 문의사항 :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(031-8053-6323)

평택소방서